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4

제1장 총칙 <신설 2020. 8. 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전자우편주소
-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0. 8. 4.>
-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2020. 8. 11., 2022. 6. 7.>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 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법인등록번호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설립연월일
- 2. 팩시밀리번호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신설 2020. 8. 4., 2022. 6. 7.>
- 1.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 2.「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 3. 「새마을금고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 5. 「보험업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마.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머.「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고. 외국에서 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 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자
-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기간・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기간·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지 급에 관한 정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기간・내용 등에 관한 정보
 - 가.「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나.「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 라. 「무역보험법」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마.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 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 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매출처·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입출내역 및 재고자산·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 ⑪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③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 2.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 법 법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면책 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 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⑤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0. 8. 4.>
- ⑩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⑪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 3.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 11., 2019. 6. 25., 2020. 8. 4., 2022. 6. 7., 2022. 6. 28., 2023. 12. 19.>
-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공제조합
 - 나. 공제회
 -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7. 감사인
-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⑪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⑩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②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신설 2020. 8. 4.>
- ② 법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②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민사집행법」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개정 2020. 8. 4.>
- ② 법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신설 2020. 8. 4., 2021. 12. 28.>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6촌 이내의 혈족
 - 다. 4촌 이내의 인척
 -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임원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⑥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 8. 4.>

제3조 삭제 <2020. 8. 4.>

-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8. 17., 2020. 8. 4., 2022. 6. 7.>
 - 1. 정관
 -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 3. 재무제표
 -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4.>
 -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6. 7.>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20. 8. 4.>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변리사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 2.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제목개정 2020. 8. 4.]

-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 · 바목 ·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 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마목・바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 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다목·마목·바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상시고용인력
 - 가. 공인회계사
 -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
 -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 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20. 8. 4.]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8. 4.>
-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7., 2020. 8. 4.>

-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 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20. 8. 4.>
-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국가
- 2.「예금자보호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5. 한국자산관리공사
-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 7. 회사의 합병·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20. 8. 4.>
-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
- 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 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0. 8. 4., 2021. 10. 21.>
-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1. 2., 2011. 8. 17., 2020. 8. 4.>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개정 2020. 8. 4.>
-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8. 4.>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개정 2020. 8. 4.]

-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개정 2021. 12. 28.>
 -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 2.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 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마. 최근 5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 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 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 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 치
-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양도의 경우
 -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2. 양수·분할·합병의 경우
 -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나.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 다.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8. 4.]

-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 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6. 27.>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 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 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 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4.「발명진흥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업무
- 5. 「특허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 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 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④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채권추심업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 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 3. 신용정보업
-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 ·부대업무
-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한도를 비교· 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 8. 4.]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 8. 4.]

-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8. 4.]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4.>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 8. 4.>

-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 경제적 필요성

[전문개정 2020. 8. 4.]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삭제 <2020. 8. 4.>

-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8. 4., 2022. 6. 7.>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5. 9. 11.>
-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1.>
-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 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도난 ·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9. 1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9. 11.>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개정 2015. 9. 11.]

-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6. 7.>
 -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 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 8. 4.>

-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8. 4.>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 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해야 한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다.<개정 2020. 8. 4.>

-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 8. 17., 2015. 9. 11., 2020. 8. 4.>
-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2.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 3.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4.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 5. 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1. 8. 17,, 2020. 8. 4.>
-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1. 8. 17., 2020. 8. 4.>
-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 삭제 <2020. 8. 4.>

- **제17조(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1.>
- 1. 사내이사
- 2. 집행임원(「상법」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 3.「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될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1.>
-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1.>
- ①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2.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⑧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방법
 -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 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2., 2020. 8. 4.>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 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 ⑤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 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개정 2020. 8. 4.>
-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8. 4.>
- ⑦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5. 9. 11.]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 8. 4.>

제1절 신용정보업 <신설 2020. 8. 4.>

-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목개정 2020. 8. 4.]

-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1. 8. 17.]

-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8. 4.]

-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 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방법
 -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 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 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 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
 -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 8. 4.>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 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 다 어렵게 하는 행위
-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 공·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대리·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2. 6. 7.>
-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5.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 6.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행정안전부
- 2. 보건복지부
- 3. 고용노동부
- 4. 국세청
- 5. 관세청
- 6. 조달청
- 7.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8.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13.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14. 국민연금공단
-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3.「상호저축은행법」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새마을금고법」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 • 제공 <신설 2020. 8. 4.>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6. 9. 22., 2022. 6. 7.>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4. 「어음법」및「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 5.「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 7. 신용회복위원회
-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 6.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 인가 인정 지정 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 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2. 6. 7.>
-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하거나「전자정부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5. 9. 11., 2022. 6. 7.>

-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7.>
-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개인신용평가회사
-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 9. 11.]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란 제2조제 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신설 2020. 8. 4.>

-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1. 8. 17., 2015. 9. 11.>
 -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2. 집중관리 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 1. 17., 2012. 1. 25., 2015. 6. 30., 2015. 9. 11., 2016. 3. 11., 2016. 7. 6., 2016. 9. 22., 2018. 5. 28., 2019. 4. 2., 2019. 6. 25., 2020. 8. 4., 2020. 8. 11., 2020. 12. 8., 2022. 6. 7., 2023. 12. 19.>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4. 신용회복위원회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16. 한국자산관리공사
- 17. 국민행복기금
-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 1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20.「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11.>
-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1.>
-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신설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 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제3호·제4호의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 바.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9. 11.>
-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9. 1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한다.<개정 2015. 9. 11.>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 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5. 9. 11., 2020. 8. 4.>
-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개정 2015. 9. 11.>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 공하는 업무
-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홍보・출판업무
-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 9. 11.]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신설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 9. 11., 2020. 8. 4.>

[제목개정 2015. 9. 11.]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 2.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중앙회·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공익성·전문성·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1.]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람
-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 (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心神障礙)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①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인력・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 폐업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개정 2022. 6. 7.>
-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 리할 것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9. 11., 2018. 5. 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삭제 < 2015. 9. 11.>
 -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1.>
-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본조신설 2018. 5. 28.]

제25조 삭제 <2013. 8. 27.>

제26조 삭제 <2013. 8. 27.>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 8. 4.>

-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 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0. 8. 4,, 2022. 6. 7.>
 -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 8. 4.>
 -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 8. 4.>
-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 9. 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 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1.>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신설 2015, 9, 11.>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8. 4.>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15. 9. 11., 2020. 8. 4.>
-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5. 9. 11., 2020. 8. 4.>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개정 2011. 8. 17., 2015. 9. 11., 2017. 1. 10., 2020. 8. 4.>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 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 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 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 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 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6. 「민법」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7. 삭제 < 2020. 8. 4.>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8. 4.>
-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 2. 「상법」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3.「상법」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15, 9, 11,>
- ③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 8. 17., 2015. 9. 11., 2020. 8. 4., 2022. 6. 7.>
- ④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개정 2011. 8. 17., 2015. 9. 11.>
-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 1.「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 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 4. 공제조합등이 수행하는 공제사업
 -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
 - 6.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ㆍ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6. 7.>
- 1.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 2.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 4.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⑦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 2.「관세법」제116조
- 3.「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5
- 4. 「전자정부법」제42조
-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항
- 7.「외국환거래법」제21조
- ⑧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⑨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⑩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⑪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4.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전송요구 철회·거절 및 전송정지·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 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 5. 개인신용정보 전송 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8. 4.]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1.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 ④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 ⑤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 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고지사항
-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 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 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 2. 해당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취소 및 변경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 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바.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 사.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 9. 11.>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9. 11.>
 -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 9. 11., 2016. 3. 29., 2022. 6. 7.>

-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3. 성과관리
- 4. 위탁업무의 수행
-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5의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개정 2015. 9. 11.>
- ⑥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신설 2015. 9. 11.>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 다.<신설 2015. 9. 11.>
-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1.>
- 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11.>

[제목개정 2015. 9. 11.]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자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는 사실
-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2. 6. 7.>
- 1. 서면
- 2. 전화
- 3. 전자우편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22. 6. 7.>
-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기 전
-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 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본조신설 2020. 8. 4.]

-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 2. 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9. 11., 2020. 8. 4.>
 -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등
 -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 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1.>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9. 11.>
 -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4., 2022. 6. 7.>
-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 8. 4.>
- 1.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
- 2.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9. 12. 10., 2020.

8. 4.>

- 1. 서면
- 2. 전화
- 3. 전자우편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 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5. 9. 11.]

[제목개정 2020. 8. 4.]

-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9. 11.]

- **제34조(무료 열람권)**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20. 8. 4.>
 -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 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6. 7.>
 -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최초 대출일
 - 나.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도 양수 내역 및 양도 양수 기관 내역
 - 다. 최종거래의 양도자, 양수자 및 거래일
 - 라. 최종 양도ㆍ양수 당시 이전된 채권원금
 -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 3.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일
 - 4. 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일
 - 5.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위탁업체의 이름
 - 6. 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연락처
 -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교부・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20. 8. 4.>]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8. 4.]

- 제34조의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 8. 4.>
 -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개정 2020. 8. 4.>
 - ④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 8, 4.>
 -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개정 2020. 8. 4.>
 - ⑥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은 그 신용정보 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8. 4.>

[본조신설 2015. 9. 11.]

[제목개정 2020. 8. 4.]

[제34조의2에서 이동 <2020. 8. 4.>]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4조의5(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및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 여 보관해야 한다.
 - 1. 가명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가명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가명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 5.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3항의 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의 인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 보제공・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1.]

-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 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0. 8. 4.>
 - 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 ②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개정 2017. 10. 17.>
 - ④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 3. 200억원
 - ⑤ 삭제<2017. 10. 17.>
 - ⑥ 금융위원회(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11.]

-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11.]

-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9. 11.]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9. 11.]

제35조의8 삭제 <2020. 8. 4.>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2. 6. 7.>

- 1. 신용정보집중기관
- 2. 신용정보회사
-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2의3. 채권추심회사
- 3.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5. 9. 11.]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 위탁한 업무
-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6조의2(감독·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2. 서민금융진흥원
- 3. 신용회복위원회
- 4. 국민행복기금
- 5.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0. 8. 4.]

-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 등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4.]

-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20. 8. 4.>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 변경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 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0. 8. 4.>
 -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신설 2020. 8. 4.>
 -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8. 4.>
-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9. 11., 2020. 8.
 -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 2. 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4.>

-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 6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8. 법 제38조제5항・제6항・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 8의4.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 8의5.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 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조사 등에 관한 사무
-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 14.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8. 6., 2015. 9. 11., 2020. 8. 4.>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 3. 법 제22조제1항・제2항, 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8. 6., 2015. 9. 11.>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 8. 6., 2015. 9. 11.>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8. 4.>
-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 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0. 8. 4.>

[본조신설 2012. 1. 6.]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8. 4.>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